

#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공감사기준」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감사결과 시정 조치 항목의 종류 및 기준을 세분화하고, 그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감사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감사결과 처분 요구의 종류를 변상명령, 징계 또는 문책, 시정, 주의촉구 또는 주의, 서면경고, 개선, 권고, 통보로 세분화하고 각 종류별 기준을 마련함(안 제11조 제1항)
- 처분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함(안 제11조 2항)
-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,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(안 제11조 제3항)

#### 4.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감사결과의 시정 조치 등)”을 “(감사결과의 처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정 조치”를 “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변상명령 :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
2. 징계 또는 문책 : 「국가공무원법」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3. 시정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·회수·환급·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주의촉구 또는 주의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,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
5. 서면경고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

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

6. 개선 : 감사결과 법령상·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7. 권고 :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8. 통보 :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1조제2항 중 “시정 조치 후”를 “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”를 “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·제도상 또는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감사결과의 시정 조치 등)</p> <p>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감사기관인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‘대법원 윤리감사관 등’이라 한다)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<u>시정 조치</u>를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1조(감사결과의 처리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</u> -----.</p> <p>1. <u>변상명령</u> :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</p> <p>2. <u>징계 또는 문책</u> : 「국가공무원법」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</p> <p>3. <u>시정</u>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<u>추징·회수·환급·추급 또는 원상복구</u>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4. <u>주의촉구 또는 주의</u>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</p>

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,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

5. 서면경고 :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

6. 개선 : 감사결과 법령상·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7. 권고 :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8. 통보 :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부

<p>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<u>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<u>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② ----- -----<u>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</u> -----.</p> <p>③ ----- <u>일반 사무감사결과 법령상·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.</p>
--	--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76